

성노동자들은 왜 말할 수 없나?

오경미(오픈넷 연구원)

성산업을 구성하는 다양한 성서비스 업 중 성기삽입을 전제로 하는 성성서비스 매매에 대한 법적 규제는 국가마다 상이하다. 먼저 성서비스 매매에 연루된 모든 개인이나 집단(서비스 제공자(이하 성노동자), 서비스 구매자, 성노동자와 구매자를 연결하는 브로커 혹은 운영자)을 처벌하는 국가가 있는 반면 부분적인 비범죄화로 매매와 판매는 허용하되 집합적인 업소 운영은 처벌하는 국가도 있다. 혹은 국가의 승인 아래 허가 받은 업체나 지역에 한해 매매 행위가 이루어지는 국가도 있다. 전면 비범죄화한 국가도 있다. 한국은 첫 번째의 유형으로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제2조와 제6조에 따른 성매매피해자(위력, 약물 투약, 인신매매 등에 의해 성매매를 강요당한 사람)를 제외한 성노동자, 구매자, 알선자 모두를 처벌하고 있다.

인신매매나 강요 혹은 폭력에 의해 강제적으로 이루어진 성매매를 제외하고 성매매에 연루된 모든 이를 처벌한다는 법적 제도는 성매매에 연루된 모든 이를 ‘공평’하게 처벌한다는 취지로 읽혀 일견 합리적으로 여겨진다. 그러나 법의 취지와 달리 법의 적용을 받는 성산업 현장에서 법은 성서비스를 제공하는 성노동자를 가장 취약한 위치로 내몬다. 자발과 비자발의 경계는 모호하기 짝이 없지만 강요를 당하지 않은 이상은 어떤 경우라도 성서비스를 제공하였다는 사실을 범죄로 간주하는 제도는 성노동자를 관리하거나 성노동자와 구매자를 연결해주는 알선자와 성서비스 구매자가 성노동자를 부당하게 착취하는 매우 유용한 수단이 된다. 일터의 환경이 열악해도, 구매자가 어떤 요구를 하던지 심지어 폭력을 행사해도 신고할 수도 없고 진정을 호소할 수 있는 기관도 없다. 성노동자는 일터에서 경험한 피해를 고스란히 떠안을 수밖에 없다. 성매매특별법은 성노동자를 보호한다는 명목으로 만들어졌지만 현장의 적용과정에서 취지와 달리 성노동자를 구조적으로 취약하게 만들고 있다.

어떤 산업도 산업 내 특정 업체에서 직무를 수행하는 노동자에게 자발과 비자발을 묻고 그것을 입증하라는 책임을 요구하고 입증할 수 없으면 범죄로 간주하지 않는다. 또 우리 사회는 제도를 통해 직장 내에서 부당한 처우를 당한 이들을 보호하고 있다. 제도가 미흡하다면 노동자 스스로가 적극적으로 자신의 경험을 공론화하고 제도 개선과 정책 마련을 요구한다. 이미지 몇 점을 준비했는데, 그 중 첫 번째 이미지는 국가인권위원회가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홍보를 위해 제작한 일종의 카드 뉴스로 어떤 행위가 직장 내에서 벌어지는 ‘갑질’ 인가를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으며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다는 사실도 알려주고 있다. 두 번째와 세 번째

이미지는 출판노동조합에서 제작한 카드뉴스로 부당한 임금 책정과 과도한 노동시간을 요구하는 출판사를 특정하여 시정을 요구하고 있다. 네 번째와 다섯 번째 이미지는 2017년 11월에 출범한 민간 공익단체인 “직장갑질119”가 코로나19 이후 직장에서 일어난 다양한 갑질(무급



휴가, 불이익, 연차강요 등을 공론화하고 정부가 부당한 해고와 휴직을 막기 위해 마련한 제도(고용유지지원금, 유급휴가비, 생활지원비, 가족돌봄휴가, 생활안정자금융자 등)를 소개하고 현장의 제보를 받는 코로나대책반을 운영하겠다는 계획을 담은 카드 뉴스의 일부이다. 마지막 이미지는 소비자 혹은 이용자의 폭력에 빈번하게 노출되어 있는

성명서

갑질하고 노동환경 망치는 출판사에 상을 줄 순 없다

출판문화발전 정부포상에 대한 출판노조협의회 입장

출판문화발전 정부포상에 대한 출판노조협의회 입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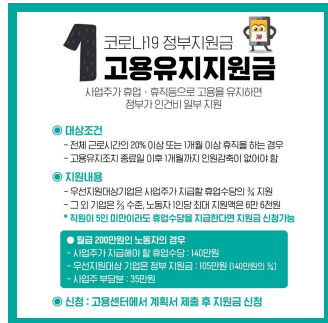
1/14연봉? 계속되는 멍청한 불법

후진 양성과 출판문화 발전에 기여했다는 '한울엠플러스'는 출판계에서도 소문이 많았던 회사다. 실제 제직했던 노동자 A씨는 '최저임금에 겨우 맞춰주는 연봉인데다가 퇴직금을 사전에 계산해 연봉에서 제외하는 1/13연봉보다 더 심한 1/14연봉(12개월 임금+퇴직금+상여금 포함)으로 지급되어 삶이 열악해질 수밖에 없었다고 했다.

또 다른 노동자 B씨는 '3천 여 종의 전문학술 출판물 발간이라는 화려한 찬사 뒤에는 새벽 출근과 밤샘 작업을 하는 사람들이 있다. 학술서 출판의 경우 대부분 남기가 정해져 있는데, 계약을 많이 하는 것에 비해 적인 수는 줄고 있어 남기를 맞추기 위해 한 명이 세 배된 또는 그 이상의 원고를 동시에 진행하는 가족형 스케줄이 계속되었다고 말했다.

1/7

3/7



대표적 노동자인 콜센터 직원의 노동 조건이 사회적 문제가 된 후 처우 개선 문제가 공론화되고 일어난 변화를 받

영한 이미지이다.

성산업에 종사하고 있는 것 자체가 불법인 성노동자들에게 위와 같은 사례는 그림의 떡일 것이다. 관리자에게 성추행을 당해도, 수입을 갈취당해도, 구매자에게 폭행을 당하거나 성폭행을 당해도 성노동이 불법인 이상 성노동자가 일터에서 당한 부당한 경험은 피해로 간주될 수 없고 당연히 피해에 대한 법적 대응이나 해결을 요구할 수도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해사실을 공론화했을 때 성노동자들에게 되돌아오는 것은 사회적 공감과 연대보다는 거센 비난과 멸시다.

일각에서는 성노동자들의 피해에 대한 해결책으로 성서비스 구매자만을 처벌하자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그러나 런던에서 활동하고 있는 성노동자이자 활동가인 주노 맥은 성구매자는 혹시나 있을 지도 모를 처벌이 두려워 자신에게 안전한 공간으로 성노동자를 호출할 가능성과 함께 신상 정보까지도 거짓으로 알려줄 가능성을 들었다. 성노동자는 구매자의 거짓 정보를 가지고 있어 구매자에게 유리한 공간에서 어떤 일을 당해도 그를 추적하여 찾을 수 없다면 처벌은 어려워질 수밖에 없다.¹⁾ 더군다나 이와 같은 관점은 누군가를 처벌해 궁극적으로 성산업을 소멸시켜야 한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는데, 그러다보니 성산업의 특수성에 의해 발생하고 있는 현장의 문제(폭행, 성희롱, 성폭력, 임금 편취 등)에 대한 대응에는 상대적으로 무관심하거나 미온적인 자세를 취하고 있다.

성서비스를 사고 파는 행위는 누군가에게 불쾌한 감정을 야기할 수 있다. 그러나 강요된 행위

1) Juno Mac(2016). The laws that sex workers really want. TED Talk.

가 아닌 이상 성서비스의 구매와 판매는 명백하게 범죄의 영역에 속한다기보다는 윤리의 영역에 속한다. 성서비스 매매에 대해 각국이 다른 입장을 취하고 있다는 것이 그 근거일 것이다. 또한 성산업은 우리들이 바라는 것처럼 쉽게 사라지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 진정 성노동자를 보호하고 싶다면 성노동자가 맞닥뜨린 현실을 직시하고 이를 해결할 수 있는 실질적인 해결책을 찾고 사회적 안전망을 구축하는 것이 보다 현실적인 접근이 아닐까?